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신업건설위원회(2018.11.21.)

조례안 검토보고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신 늉 호]

목 차

1	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
2	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	7
3	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1

의안번호 제2018 - 86호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02.

나. 제 출 자 :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

(권재경·심재수·최정환·김태경 의원)

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05.

2. 개정이유

○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시 그리는 벽화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그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범죄예방을 위한 벽화 조성 및 유지・관리사업을 신설함.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제22조

「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, 도시건축과

라. 기타 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- 예고기간 : 2018. 10. 25. ~ 10. 30.
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O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 시 벽화 조성과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것으로
- O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참고자료

🔴 관련법령 발췌

□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 4. 6., 2007. 5. 17., 2009. 12. 29., 2011. 7. 14., 2017. 4. 18.>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의 조정
- 나. 조례 · 규칙의 제정 · 개정 · 폐지 및 그 운영 · 관리
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· 감독
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 · 후생복지 및 교육
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- 사. 예산의 편성 ·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- 아. 행정장비관리.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- 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- 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- 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· 운영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
- 가. 소류지(小溜池)・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나. 농산물 · 임산물 · 축산물 ·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- 라.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
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 · 지도
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
- 사. 공유림 관리
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- 차. 지역산업의 육성 · 지원
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· 지원
- 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- 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- 가. 지역개발사업
- 나. 지방 토목 · 건설사업의 시행
- 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・개수(改修)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- 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- 사. 자연보호활동
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- 자. 상수도 ·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- 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 ·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 ·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파. 주차장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5. 교육・체육・문화・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- 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 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 · 보존 및 관리
- 라. 지방문화 · 예술의 진흥
- 마. 지방문화 · 예술단체의 육성
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
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- 나. 지역의 화재예방 · 경계 · 진압 · 조사 및 구조 · 구급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「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」

(시행일: 2017.11.29.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"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·개선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"이란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.
- 제3조(기본원칙)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.
- 2.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, 울타리, 조경·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.
- 3.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다.
- 4.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, 공원, 휴게시설,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.
- 5.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·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.
- 제4조(책무)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「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- 1.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
- 2.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
- 3.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6조(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)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거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7조(우선 적용 범위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기준

- 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1.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
- 2.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
- 3.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
- 4.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,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
- 제8조(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)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1.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
- 2.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
- 3.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조성사업
- 4. 범죄예방 도시화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
- 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9조(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의 설치)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 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제6조에 따른 기준 마련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「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에 따른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. 이 경우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 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
- 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11조(홍보)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-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제정 2017.11.29 조례 제243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의안번호 제2018 - 87호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02.
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05.

2. 개정이유

○ 경기침체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비용 지원에 대한 대출금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경영안정자금 이자비용 지원에 대한 대출금 범위 확대.(안 제5조)
 - 2천만원 이내 ⇒ 5천만원 이내
- 나. 명칭변경.(안 제6조)
 -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'착한가게'를 '착한가격업소'로 변경.
- 다.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 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○ 예고기간 : 2018. 9. 28. ~ 10. 18.

○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상 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비용 지원에 대한 대출금 범위를 확대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참고자료

🔴 관련법령 발췌

□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7, 7, 26] [법률 제14839호, 2017, 7, 26, 타법개정]
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현행「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소상공인"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.
- 2. "금융기관"이란「은행법」제2조에 따른 은행 및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.
- 3. "이자차액 보전(이하 "이차보전"이라 한다)"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 등)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,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규모, 지원조건, 선정기준, 신청절차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 및 제외 대상) ①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차보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창업자금: 가게 증·개축,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
 - 2. 경영안정자금: 창업자금 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
 - 3. 소상공인이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수수료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- 1.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. 다만, 증·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 에 제한을 받지 않음

- 2.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
- ③ 주점업, 게임장, 금융업, 골프장, 사치·향락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은 제1항의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제5조(지원범위) ① 이차보전금 등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.5퍼센트 이내 이자
 - 2. 경영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.5퍼센트 이내 이자
 - 3.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
 -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- 제6조(착한가게 특례 지원) 군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제5조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연 3.0퍼센트 이내 이자
 - 2. 쓰레기봉투. 시설 개·보수사업비 등
- **제7조(지원 절차)**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- 제8조(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) ① 군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.
 - ③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지원중지 및 환수)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.
 - 1. 사업장을 휴·폐업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
 - 2.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
 - 3.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
 - 4.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
 - 5.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제10조(사후관리)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.
-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의안번호 제2018 - 88호

─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─

검 토 보 고 서 —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02.
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05.

2. 개정이유

○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에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절차를 마련하여 공유 재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로 위임된 의회 동의절차를 신설.(안 제12조제4항)
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, 그 동의 절차는 「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름.
- 나. 법제처 알기 쉬운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
 - ○「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26조
 - ○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0조
- 나. 예산 조치 : 별도조치 사항 없음
- 다. 합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- 라. 기타 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8. 10. 1. ~ 10. 22.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 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O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
- O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O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등 변동사항 대하여 개별법에 따른 각각의 조례로 규정하기보다 총괄적인 공유재산 관리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6. 참고자료

🔴 관련법령 발췌

□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(약칭 : 신재생에너지법) [시행 2017. 9. 22.] [법률 제14670호, 2017. 3. 21., 일부개정]

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·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(隨意契約)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"임대"라 한다)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.
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<u>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u>
-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<신설 2013. 7. 30.> [전문개정 2010. 4. 12.]

□「**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**」 (약칭 : 공유재산법) [시행 2018. 10. 16.] [법률 제15794호, 2018. 10. 16., 일부개정]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・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〈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・군・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5. 1. 20.〉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

- ·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 〈신설 2015. 1. 20.〉
-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. 20.>
-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 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 〈개정 2015. 1. 20.〉

[전문개정 2008. 12. 26.] [제목개정 2015. 1. 20.]